| 의안번호  | 제2771호 |
|-------|--------|
| 의 결   | 2024   |
| 연 월 일 | (제 회)  |

| 의      |  |
|--------|--|
| 결      |  |
| 사<br>항 |  |
| 항      |  |

#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발 의 자 | 고성군의회의장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4. 1. 17. |

#### 「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 안 번 호 제2771호

발의연월일: 2024. 1. 17. 발 의 자: 고성군의회의장

#### 1. 제안이유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2조 및 「고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56조의2에 의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함에 따라,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주민조례청구안을 발의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축사시설 등의 입지 제한 기준 정비(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조 례 명 : 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 개정

나. 대 표 자 : 박완욱

다. 청구일자 : 2023. 8. 31.

라. 청구취지

-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조건 및 일부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 요청함.
-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 등

마. 서명기간 : 2023. 9. 4. ~ 12. 4.(3개월)

바.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: 2023. 11. 16.

사. 청구권자 수 요건미충족 보정안내 : 2023. 12. 8.

아. 주민조례 보정청구인 명부 제출 : 2023. 12. 20.

자.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23. 12. 26. ~ 2024. 1. 4.

필요연서수 : 906명 이상(청구권자 총수 1/50 이상)

- 유효서명인수 : 927명

차.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안 회부 : 2024. 1. 5.

카. 수리 심의 결정 : 2024. 1. 9.

타. 입법예고 : 생략

- 「2023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」(p39 Q&A),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####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축사등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의한 배출시설을 말한다)의 대지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 중 4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100미터(2차선 이상 4차선미만 일반국도, 지방도는 30미터)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 다만, 설치제한 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기존 축사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축·개축 또는 이전할 수 있다.
- 가. 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: 주민 동의없이 증축·개축 또는 이 전 가능
- 나. 가목 외의 경우: 증축·개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 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 례」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득할 것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.

#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혅 했

#### 개 젔 아

제21조의2(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제21조의2(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의 설치제한) ① (생 략)

1. 축사등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 한 배출시설을 말한다)의 대지는 주 요도로(「도로법」에 따른 고속국 도. 일반국도. 지방도를 말한다)에 서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 다만, 기존 축사나 이전하는 축사에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증축 · 개축 · 이전할 수 있다.

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 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득할 것

나. 개축: 주민 동의 없이 가능

등의 설치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
--「도로법」에 따른 고속국도. 일반국도, 지방도 중 4차선 이상 도로로부터 100미터(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. 지방도는 30미터)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. <u>다만, 설치제한 구역</u> 내에서 운 영하는 기존 축사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증축. 개축 또는 이전할 수 있다.

가. 증축ㆍ이전: 증축ㆍ이전하고자 하 가. 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 한 조례 | 에서 정한 현대화 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 치할 경우 : 주민 동의없이 증축·개축 또는 이전 가능

> 나. 가목 외의 경우: 증축 • 개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 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 역(「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| 에서 정하는 주거밀 집지역을 말한다) 세대주의 3분 의2 이상 동의를 득할 것

### 별첨

##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## 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(주민조례발안법)

제4조(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- 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을 부과·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
- 3.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- 4.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

- 1.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·도: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
- 2.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: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
- 3.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
- 4.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
- 5.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
- 6. 인구 5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
-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청구인명부의 제출 등)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(전자서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 간이 지난 날부터 시·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,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- 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- 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 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- 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

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■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

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자 수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.

#### ■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

제56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